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국세청, 2010. 3.)

● 경비율제도 개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소득금액 > ② 소득금액” 인 경우 ②소득금액으로 신고 가능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2008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 중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8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구분	2008년 수입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8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하 주요경비의 범위 및 수취·보관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경비의 범위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p>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단, 음식료, 보험료, 수선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한다.</p> <p>*)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한다.</p>	<p>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p>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	

	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장부작성·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